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종이없는 친환경 국회 구현〉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74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 · 위성곤 · 조인철 · 박해철 · 김성환 · 민병덕
이수진 · 이소영 · 김승원 · 전진숙 · 임미애 · 김 윤
강준현 · 서영교 · 오세희 · 민형배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4. 8. 9.

3. 회 부 일 : 2024. 8. 12.

※ 의안번호 : 267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보고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이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0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가 더욱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회는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종이문서의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문서 사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제출, 보고 또는 관리되는 문서의 형식에 대하여 종이문서의 사용이나 감축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국회법」 제128조¹⁾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감·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와 서면 모두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 내에서 종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종이없는 국회 구현을 위하여 국회 소관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²⁾.

이에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되, 종이문서가 더욱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종이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게도 전자문서의 모범적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없는 친환경 국회의 구현 및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공공기관 차원의 친환경 실천 확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일부 자구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2020년, 2021년 및 2023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참조

[표-2] 개정안 수정의견(예시)

개 정 안	수정의견 (예시)
제170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가 더욱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0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u>계획</u>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 ----- ---- <u>종이문서 감축 계획</u> -----.
③ 국회는 <u>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u> 종이문서의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문서 사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 <u>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u> ----- ----- -----.

문 의 처
02)6788-5014